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공단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제21조(타법령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적용)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은 후 제약사에 약제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3. 이에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신규로 계약되어 변경내용을 안내드리니 귀 협회 회원 요양기관에서 불임의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 접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4. 또한, 우리 공단도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환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니, 귀 협회 회원 요양기관에서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항목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주임 이대중

팀장 이선옥

팀장

전결(부재 5/30)

오세림

협조자

시행 신약관리부-1002 (2023.5.31.) 접수

()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0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전화 033-736-3243 전송 033-749-6357 / daejoong@nhis.or.kr / 비공개(7)